
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(홍익표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068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8. 3. 8.

발의자 : 홍익표 · 강창일 · 김민기

김병관 · 김영호 · 김한정

소병훈 · 송갑석 · 이재정

인재근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.

이 조문의 취지는 2005년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면서, 종전에 종합토지세를 경감할 때 경감 비율만큼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던 방식을 새로 개편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함이었으나, 그 의미가 명확히 표현되지 않아 해당 비율만큼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, 과세대상 구분체계 상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음.

이에 재산세의 경감 방식 규정을 과세대상구분체계에 관한 조문에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에 관한 조문으로 이관함으로써

재산세를 경감할 때 과세대상구분을 분리과세로 전환하는 취지가 아
님을 명확히 함(안 제106조제1항 및 제113조제1항).
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6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,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하며,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.

제1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이 법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할 때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서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경감비율(비과세 또는 면제의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00으로 본다)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여 세율을 적용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반적 적용례)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06조(과세대상의 구분 등)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,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.</p> <p>1. 종합합산과세대상: 과세기준 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 한다.</p> <p>가.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</p> <p>나.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</p> <p>2. 별도합산과세대상: 과세기준 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</p>	<p>제106조(과세대상의 구분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. 1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<u><단서 삭제></u></p> <p><u><삭제></u></p> <p><u><삭제></u></p> <p>2. ----- -----</p>

<p>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. <u>다만, 제1호가목 및 나 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.</u></p>	<p>----- -----. <u><단서 삭제></u></p>
<p>가. ~ 다. (생 략)</p>	<p>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</p>
<p>3. (생 략)</p>	<p>3. (현행과 같음)</p>
<p>② · ③ (생 략)</p>	<p>② · 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13조(세율적용)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율을 적용한다. <u><단서 신설></u></p>	<p>제113조(세율적용) ① ----- ----- ----- ----. <u>다만, 이 법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할 때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서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경감비율(비과세 또는 면제의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00으로 본다)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여 세율을 적용한다.</u></p>
<p>1. ~ 3. (생 략)</p>	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
<p>② ~ ⑤ (생 략)</p>	<p>② ~ ⑤ (현행과 같음)</p>